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2.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에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에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상장 주식·사채 등을 비롯한 증권을 전면 전자화 하는 전자증권 제도 운영 인력 1명(6급 1명) 및 인권 침해사건 조사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에 설치된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난민심의과’를 분리·신설하며, 심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정시설의 수용밀도 완화를 위하여 강원북부교도소를 신설하며,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신설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비행청소년의 초기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 및 천안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중 동기 없는 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를 통한 선별과 전문적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교정청 및 광주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의정부교도소·진주교도소·천안교도소·군산교도소 및 안양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각각 신설하고, 원활한 형사사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제주교도소에 출정과를 신설하며,

각 기관 신설 필요인력 확보와 수용자 경계강화 및 야간 교대근무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9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9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신설부서 중 난민심의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

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난민심의과 신설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난민심의과’의 업무 분장내용을 구분하여 정하며 기존의 난민과는 업무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난민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본부 특정범죄자관리과의 명칭을 ‘전자감독과’로 변경하며, 치료감호소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만료 이후 신규 배치가 어려움에 따라 행정심판, 형사고소, 진정 및 청원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보호직 정원 1명을 치료감호소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전자감독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범죄자관리과장”을 각각 “전자감독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및 난민심의과를 두되,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9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난민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2. 재정착희망난민의 난민인정 및 수용에 관한 사항
3.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6.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제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2.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운영에 관한 사항

3.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국가정황 수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난민위원회 관련 사항

제15조제2항 후단 중 “분류센터”를 “분류센터, 대전지방교정청 및
광주지방교정청에는 분류센터”로 한다.

제16조제9항제4호 내지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0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

1. 수용자의 심리치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범·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
에 관한 사항

3. 중독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교육 및 고충상담

제27조제6항 및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국적·통합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32조제2항제2호 중 “국제투자분쟁 예방”을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으로 하고, “5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명)”을 “7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2명)”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5호 중 “4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을 “5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 6급 1명)”으로 한다.

제33조제9항제3호 중 “1명”을 “1명, 보호직 1명(6급 1명)”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의 2 중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하부조직 중 ‘국적과’를 ‘국적·통합과’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697”을 “706”로 하고, 일반직 계 “666”을 “675”로 하며, 서기관 “17”을 “18”로,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3”을 “2”로,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7”을 “8”로, 출입국관리사무관 “29”를 “31”로, 행정사무관 “4”를 “5”로,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13”을 “14”로,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19”를 “22”로,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0”을 “11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5,963”을 “16,256”으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5,957”을 “16,250”으로 하며, 일반직 계 “15,957”을 “16,250”으로 하고, 서기관 “56”을 “57”로 하며, 기술서기관 “58”을 “59”로 하고, 서기관 또는 교정관 “31”을 “33”으로 하며, 교정관 “312”를 “325”로 하고, 교감 “1,384”를 “1,415”로 하며, 식품위생주사 “11”을 “12”로 하고, 교위 “1,739”를 “1,771”로 하며, 식품위생주사보 “25”를 “29”로 하고, 간호주사보 “37”을 “38”로 하며, 시설주사보 “20”을 “21”로 하고, 교사 “5,435”를 “5,523”으로 하며, 공업서기 “61”을 “63”으로 하고, 식품위생서기 “15”를 “18”로 하며, 의료기술서기 “5”를 “6”으로 하고, 간호서기 “48”을 “51”로 하며, 교도 “5,902”를 “6,000”으로 하고, 공업서기보 “57”을 “59”로 하며, 식품위생서기보 “12”를 “14”로 하고, 운전서기보 “250”을 “256”으로 하며,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109”를 “110”으로 한다.

별표 8 중 총계 “419”를 “443”으로 하고,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418”을 각각 “442”로 하며, 보호주사 “3”을 “4”로 하고, 간호주사 “22”를 “24”로 하며, 간호주사보 “51”을 “56”으로 하고, 간호조무주사보 “6”을 “7”로 하며, 간호서기 “53”을 “58”로 하고, 간호조무서기 “15”를 “16”으로 하며, 간호조무서기보 “124”를 “133”으로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920”을 각각 “974”로 하고, 보호사무관 “44”를 “46”으로 하며, 보호주사 “100”을 “108”로 하고, 보호주사보 “176”을 “192”로 하며, 보호서기 “178”을 “193”으로 하고, 보호서기보 “159”를 “172”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30”을 각각 “35”로 하고, 임기제 서기관 (상임위원) “3”을 “4”로 하며, 보호사무관 “5”를 “6”으로 하고, 보호주사 “7”을 “9”로 하며, 보호주사보 12 다음에 “보호서기보 1”을 신설한다.

별표 11 중 총계 “1,681”을 “1,73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일반직 계 “1,674”를 각각 “1,725”로 하며, 보호주사 “272”를 “281”로 하고, 보호주사보 “362”를 “376”으로 하며, 보호서기 “377”을 “391”로 하고, 보호서기보 “344”를 “358”로 한다.

별표 12 중 총계 “2,439”를 “2,55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388”을 “2,502”으로 하며, 일반직 계 “2,388”을 “2,502”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 “396”을 “430”으로, 출입국관리주사보 “649”를 “681”로, 출입국관리서기 “655”를 “678”로, 출입국관리서기보 “443”을 “468”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1.0”을 “4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1.0”을 “49.0”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서기보 “41.0”을 “39.0”으로 한다.

별표 12의2 중 총계 “2,439”를 “2,551”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2,388”을 “2,502”으로 하며, 일반직 계 “2,388”을 “2,502”으로 하고, 출입국관리주사 “384”를 “418”로, 출입국관리주사보 “649”를 “681”로, 출입국관리서기 “655”를 “678”로, 출입국관리서기보 “443”을 “468”로 하며,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51.0”을 “49.0”으로 하고, 일반직 계 “51.0”을 “49.0”으로 하며, 출입국관리서기보 “41.0”을 “39.0”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생략)	제7조(범죄예방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범죄예방정책국에 범죄예방기획과 · 보호정책과 · 치료처우과 · 보호관찰과 · 소년보호과 및 <u>특정범죄자관리과</u> 를 둔다.	② ----- ----- ----- -- <u>전자감독과</u> -----.
③범죄예방기획과장 및 치료처우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정책과장은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호관찰과장 및 소년보호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u>특정범죄자관리과장</u> 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 ----- ----- ----- <u>전자감독과장</u> -----.
④ ~ ⑧ (생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⑨ <u>특정범죄자관리과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⑨ <u>전자감독과장</u> ----- -----.
1. ~ 13. (생략)	1. ~ 13.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및 <u>난민과</u> 를 두되, 출입국기획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체류관리과장, 이민조사과장, 이민정보과장, 외국인정책과장, 국적과장, 이민통합과장 및 난민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 ----- ----- -----, <u>난민정책과 및 난민심의과</u> 를 두되, ----- ----- -----, <u>난민정책과장 및 난민심의과장</u> 은-----.
③ ~ ⑩ (생략)	③ ~ ⑩ (현행과 같음)
⑪ 난민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⑪ 난민정책과장은-----.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1.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에 관한 사항
2.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재정착희망난민의 난민인정 및 수용에 관한 사항
3. 난민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에 관한	4.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사항 5.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 6.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8.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u><신 설></u>	5. 난민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 6. 유엔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난민 업무에 관한 사항 ⑫ 난민심의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 또는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에 관한 사항 2. 난민위원회의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난민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	---

제15조(지방교정청) ① (생략) ② 지방교정청에 총무과·보안과 및 사회복귀과를 둔다. 다만, 서울지방교정청에는 전산관리과 및 <u>분류센터</u>를 따로 둔다. ③ ~ ⑩ (생략)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 ⑧ (생략) ⑨ (생략) 1. ~ 3. (생략) 4. <u>수용자의 심리치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u> 5. <u>성폭력사범·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u> 6. <u>중독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교육 및 고충상담</u> ⑩ ~ ⑱ (생략) <신설>	심의를 위한 사실조사, 국가정황 수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난민위원회 관련 사항 제15조(지방교정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분류센터</u>를, 대전지방교정청 및 광주지방교정청에는 <u>분류센터</u>를 -----.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6조(교도소·구치소)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⑩ ~ ⑱ (현행과 같음) ⑳ 심리치료과장은 다음 사항을
--	--

	<u>분장한다. 다만, 심리치료과를 두지 아니하는 교도소·구치소에서는 보안과장이 이를 분장한다.</u> <u>1. 수용자의 심리치료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u> <u>2. 성폭력사범·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u> <u>3. 중독수용자 등 특이수용자 교육 및 고충상담</u>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⑤ (생략) ⑥ 총무과장은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20호 및 제21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⑦ 국적과장은 제5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항을 분장한다. ⑧ ~ ②4 (생략)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략)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출입국·외국인청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1호의 -----. ⑦ 국적·통합과장은----- ---제17호까지 및 제20호의-----. ⑧ ~ ②4 (현행과 같음)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생략) 2. 국제투자분쟁 <u>예방</u>, 국제협약 관련 법률 자문 및 국제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명(4급 또는 5급 4명, 5급 1명) 3~4. (생략) 5. 상사 분야 법령 제정·개정·해 석 및 경제금융 분야 법제 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생략) ⑨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의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의 공무원 정원 중 8 명(8급 8명)을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하는 때에는 「공무원임 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1.~2. (생략) 3. 치료감호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의무직 11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8명, 5급 2명), 간	1. (현행과 같음) 2. ----- 예방·대응, ----- -----7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2명) 3~4. (현행과 같음) 5. ----- ----- ----- 5명(4급 또는 5급 3명, 5급 1명, 6급 1명)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

호직 2명(4급 1명, 5급 1명), 전문경력관 가군(의료시설 담 당) 1명, 전문경력관 나군(직 업훈련 담당) <u>1명</u>	----- ----- ----- ----- <u>1명, 보호직 1명(6</u> <u>급 1명)</u>
---	--

[별표 1의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도소 및 구치소에 두는 부서의 명칭(제16조 관련)

명 칭	부 서
경북북부제2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천안개방교도소·순천교도소·목포교도소· 경북직업훈련교도소·원주교도소·안동교 도소·공주교도소·경북북부제3교도소·홍성 교도소·경주교도소·강릉교도소·장흥교 도소·영월교도소·해남교도소·상주교도 소·정읍교도소·강원북부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진주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화성직업훈련교도소·춘천교도소·청주교 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대전교도소·대구교도소·광주교도소·전 주교도소·창원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의정부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여주교도소·부산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김천소년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 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군산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 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심리치료과
천안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 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국제협력과, 심리치료 과
안양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심 리치료과
경북북부제1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분류심사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 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포항교도소·제주교도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통영구치소·밀양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수용기록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충주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수용기록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울산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 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부산구치소·수원구치소·서울동부구치소 ·인천구치소·대구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서울구치소·서울남부구치소	총무과, 보안과, 출정과, 분류심사과, 수용기록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복지과, 의료과, 시설과

[별표 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관할구역(제22조관련)

명 칭	관 할 구 역
서울보호관찰심사위원회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 강원도
부산보호관찰심사위원회	부산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상남도
대구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광주보호관찰심사위원회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대전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충청남도 · 충청북도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경기도

[별표 2의3]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명칭 및 위치 (제21조의2 관련)

명 칭	위 치
부산소년원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소년원 부산동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소년원 울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울산광역시
부산소년원 창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대구소년원 대구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구광역시
광주소녀원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광주광역시
광주소녀원 순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라남도 순천시
전주소녀원 전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대전소년원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대전광역시
대전소년원 천안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청주소녀원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춘천소년원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원도 춘천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안산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서울북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서울특별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인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인천광역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수원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의정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별표 4의2]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의 하부조직
(제27조 관련)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현행과 같음)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총무과, 관리과, 국적·통합과, 난민과, 사범과, 조사과, 이민특수조사대, 출입국정보화센터, 전 자비자센터
(이하 생략)	(현행과 같음)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97</u>	<u>706</u>	+9
•	•	•	
•	•	•	
일반직 계	<u>666</u>	<u>675</u>	+9
•	•	•	
•	•	•	
서기관	<u>17</u>	<u>18</u>	+1
•	•	•	
•	•	•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u>3</u>	<u>2</u>	-1
•	•	•	
•	•	•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u>7</u>	<u>8</u>	+1
•	•	•	
•	•	•	
출입국관리사무관	<u>29</u>	<u>31</u>	+2
•	•	•	
•	•	•	

행정사무관	<u>4</u>	<u>5</u>	+1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u>13</u>	<u>14</u>	+1
•	•	•	
•	•	•	
행정주사	<u>1</u>	<u>2</u>	+1
•	•	•	
•	•	•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u>19</u>	<u>21</u>	+2
•	•	•	
•	•	•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u>10</u>	<u>11</u>	+1

[별표 7]

지방교정청등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2항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5,963</u>	<u>16,256</u>	+29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5,957</u>	<u>16,250</u>	+293
일반직 계	<u>15,957</u>	<u>16,250</u>	+293
·	·	·	
·	·	·	
서기관	<u>56</u>	<u>57</u>	+1
기술서기관	<u>58</u>	<u>59</u>	+1
서기관 또는 교정관	<u>31</u>	<u>33</u>	+2
·	·	·	
·	·	·	
교정관	<u>312</u>	<u>325</u>	+13
·	·	·	
·	·	·	
교감	<u>1,384</u>	<u>1,415</u>	+31
·	·	·	
·	·	·	
식품위생주사	<u>11</u>	<u>12</u>	+1
·	·	·	

	•	•	•	
교위		<u>1,739</u>	<u>1,771</u>	+32
	•	•	•	
	•	•	•	
식품위생주사보		<u>25</u>	<u>29</u>	+4
	•	•	•	
	•	•	•	
간호주사보		<u>37</u>	<u>38</u>	+1
시설주사보		<u>20</u>	<u>21</u>	+1
	•	•	•	
	•	•	•	
교사		<u>5,435</u>	<u>5,523</u>	+88
공업서기		<u>61</u>	<u>63</u>	+2
	•	•	•	
	•	•	•	
식품위생서기		<u>15</u>	<u>18</u>	+3
의료기술서기		<u>5</u>	<u>6</u>	+1
간호서기		<u>48</u>	<u>51</u>	+3
	•	•	•	
	•	•	•	
교도		<u>5,902</u>	<u>6,000</u>	+98

공업서기보	<u>57</u>	<u>59</u>	+2
식품위생서기보	<u>12</u>	<u>14</u>	+2
•	•	•	
•	•	•	
운전서기보	<u>250</u>	<u>256</u>	+6
•	•	•	
•	•	•	
전문경력관 나군(직업훈련 담당)	<u>109</u>	<u>110</u>	+1
•	•	•	
•	•	•	

[별표 8]

치료감호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3항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19</u>	<u>443</u>	+24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418</u>	<u>442</u>	+24
일반직 계	<u>418</u>	<u>442</u>	+24
.	.	.	
.	.	.	
보호주사	<u>3</u>	<u>4</u>	+1
.	.	.	
.	.	.	
간호주사	<u>22</u>	<u>24</u>	+2
.	.	.	
.	.	.	
간호주사보	<u>51</u>	<u>56</u>	+5
간호조무주사보	<u>6</u>	<u>7</u>	+1
.	.	.	
.	.	.	
간호서기	<u>53</u>	<u>58</u>	+5
.	.	.	
.	.	.	

간호조무서기	<u>15</u>	<u>16</u>	+1
•	•	•	
•	•	•	
간호조무서기보	<u>124</u>	<u>133</u>	+9
•	•	•	
•	•	•	

[별표 9]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5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920</u>	<u>974</u>	+54
일반직 계	<u>920</u>	<u>974</u>	+54
·	·	·	
·	·	·	
보호사무관	<u>44</u>	<u>46</u>	+2
·	·	·	
·	·	·	
보호주사	<u>100</u>	<u>108</u>	+8
·	·	·	
·	·	·	
보호주사보	<u>176</u>	<u>192</u>	+16
·	·	·	
·	·	·	
보호서기	<u>178</u>	<u>193</u>	+15
·	·	·	
·	·	·	
보호서기보	<u>159</u>	<u>172</u>	+13
·	·	·	
·	·	·	

[별표 10]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6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0</u>	<u>35</u>	+5
일반직 계	<u>30</u>	<u>35</u>	+5
·	·	·	
임기제 서기관(상임위원)	<u>3</u>	<u>4</u>	+1
보호사무관	<u>5</u>	<u>6</u>	+1
보호주사	<u>7</u>	<u>9</u>	+2
보호주사보	12		
<u>보호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별표 11]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7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681</u>	<u>1,732</u>	+51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674</u>	<u>1,725</u>	+51
일반직 계	<u>1,674</u>	<u>1,725</u>	+51
.	.	.	
.	.	.	
보호주사	<u>272</u>	<u>281</u>	+9
.	.	.	
보호주사보	<u>362</u>	<u>376</u>	+14
.	.	.	
보호서기	<u>377</u>	<u>391</u>	+14
.	.	.	
.	.	.	
보호서기보	<u>344</u>	<u>358</u>	+14
.	.	.	
.	.	.	

[별표 12]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본문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439</u>	<u>2,551</u>	+11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388</u>	<u>2,502</u>	+114
일반직 계	<u>2,388</u>	<u>2,502</u>	+114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396</u>	<u>430</u>	+34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u>649</u>	<u>681</u>	+32
·	·	·	
·	·	·	
출입국관리서기	<u>655</u>	<u>678</u>	+23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443</u>	<u>468</u>	+25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u>51.0</u>	<u>49.0</u>	-2.0
일반직 계	<u>51.0</u>	<u>49.0</u>	-2.0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41.0</u>	<u>39.0</u>	-2.0
·	·	·	
·	·	·	

[별표 12의2]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공무원

정원표(제33조제8항 단서 및 제33조의2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439</u>	<u>2,551</u>	+11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2,388</u>	<u>2,502</u>	+114
일반직 계	<u>2,388</u>	<u>2,502</u>	+114
·	·	·	
·	·	·	
출입국관리주사	<u>384</u>	<u>418</u>	+34
·	·	·	
·	·	·	
출입국관리주사보	<u>649</u>	<u>681</u>	+32
·	·	·	
·	·	·	
출입국관리서기	<u>655</u>	<u>678</u>	+23
·	·	·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443</u>	<u>468</u>	+25
·	·	·	
·	·	·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u>51.0</u>	<u>49.0</u>	-2.0
일반직 계	<u>51.0</u>	<u>49.0</u>	-2.0
·	·	·	
출입국관리서기보	<u>41.0</u>	<u>39.0</u>	-2.0
·	·	·	
·	·	·	

[별표 13] <개정 2020. 2. 0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제35조 관련)

1. 법무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기획조정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5명 (4급 1명, 5급 1명, 7급 2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심의과	2명 (5급 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2. 법무부 소속기관

가.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삭제 <2020. 2. 00.>		
2)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지원과	5명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u>2021년 2월 28일까지</u>
3) 삭제 <2020. 2. 00.>		
4)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	4명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2020년 4월 30일까지
5) 삭제 <2019. 12. 31.>		

나. 평가대상 정원

업무	정원	평가기간
1)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38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10명, 9급 8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2) 체류외국인 관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 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90명 (6급 18명, 7급 28명, 8급 24명, 9급 2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3)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30명 (6급 5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	2020년 12월 31일까지
4)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	62명 (6급 11명, 7급 14명, 8급 16명, 9급 21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5)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7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4명, 전문경력관 나군 13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6) 출입국사범 관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 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	35명 (6급 4명, 7급 9명, 8급 12명, 9급 1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7)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37명 (6급 4명, 7급 5명, 8급 12명, 9급 16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8) 야간 교대근무 (교도소 및 구치소)	67명 (6급 4명, 7급 6명, 8급 28명, 9급 29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9) 난민심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16명 (5급 1명, 6급 5명, 7급 10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10) 체류외국인 민원 처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32명 (6급 4명, 7급 6명, 8급 10명, 9급 12명)	2021년 12월 31일까지
11)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	52명 (6급 10명, 7급 14명, 8급 14명, 9급 14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2) 소년수용자 관리(소년원)	42명 (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3) 야간 교대근무 (교도소 및 구치소)	89명 (6급 9명, 7급 11명, 8급 33명, 9급 36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4) 출입국사범 관리(출입국·외 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 무소)	29명 (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5)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 소)	50명 (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2022년 12월 31일까지
16) 항만 국경관리(출입국·외국 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 소)	33명 (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	2022년 12월 31일까지